

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4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8. 1. .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 시·군(평창군·정선군·태백시·횡성군·영월군)의 대표관광자원과 상품을 통합 개발하고, 지속가능한 관광 브랜드를 개발·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도모
- 5개 시·군의 공동 연계사업을 종합적, 체계적,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, 바람직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한 필요 사업의 적극적 발굴·추진

□ 운영개요

구 분	내 용
명 칭	-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
구 성	- 5개 시·군(평창군·정선군·태백시·횡성군·영월군)
조직(인력)	- 조합회의(의장 1, 부의장 1, 의원 3) - 사무기구(자원개발팀 2, 기획홍보팀 2, 사무보조 1)
소요예산	- 창립년도 : 150,000천원 (30,000천원×5개 시·군) ※ 초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※ 2차년부터 조합회의 협의로 분담금액(사업비 포함) 결정

□ 주요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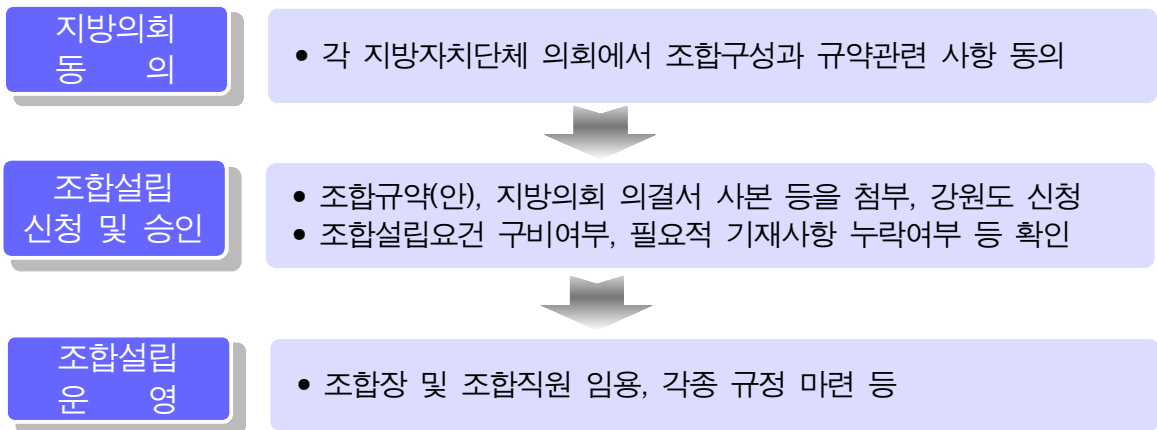
-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협의 운영
 -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협의·조정예 관한 사항
 - 강원남부권 관광개발계획 공동연계사업에 관한 사항
 -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

□ 추진경과

- 한국관광공사 제안('17. 8. 8.)
 - 올림픽도시 및 배후도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실시
- 5개시·군 실무위원회 회의('17. 7. 20. ~ 현재)
 - 조합설립 동의 및 명칭 결정
 - 주사무소 위치 확정 : 영월군 내 (현)영월문화원
 -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규약 협의한국관광공사 제안('17. 8. 8.)
 - 올림픽도시 및 배후도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실시
- 5개시·군 실무위원회 회의('17. 7. 20. ~ 현재)
 - 조합설립 동의 및 명칭 결정
 - 주사무소 위치 확정 : 영월군 내 (현)영월문화원
 -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규약 협의

□ 향후계획

- 조합설립 추진단계



- 조합설립 추진일정

구 분	기 간	주 요 내 용
지방의회 규약안 동의	'18. 1 ~ 3월	- 조합규약 시군의회 동의
조합설립 신청 및 승인	'18. 4 ~ 5월	- 조합설립 신청 및 도 승인
조합설립운영	'18. 5 ~ 7월	- 조합사무소 설치 - 조합회의 구성, 조합장 및 사무직원 임용 - 조합설립 등기 완료

- 붙임 1.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(안) 1부.
2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합의 명칭) 이 조합은 “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”(이하, “조합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제3조(조합의 구성) 이 조합은 강원도 태백시·횡성군·영월군·평창군·정선군(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을 구성원으로 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위치) 이 조합의 사무소는 강원도 영월군 관내에 둔다.

제5조(조합의 사무)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
2.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협의·조정 에 관한 사무
3. 강원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공동연계사업에 관한 사무
4.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무
5.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6.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

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,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2장 조합회의

제6조(구성 및 자격)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.

② 조합회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조합원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.

-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장 및 부의장)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-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.
-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제8조(의결사항)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조합규약의 개정안
2.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3. 예산의 심의·확정과 결산의 승인
4.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
5. 조합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
6.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-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정족수 등)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조합회의가 심의·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행정사무감사)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집행기관

제12조(조합장)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조합장은 조합회의 의결로 임명한다.

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통할한다.

제13조(사무기구)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재 무

제14조(경비부담)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조합원인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.

②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
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(행정 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)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

제15조(예산·회계 등)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·확정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

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, 재무회계,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.

제16조(결산)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(3월 31일)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,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,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)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처분하며,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8조(위탁운영)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관광개발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조합의 해산)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출자 비율에 의한다.

제20조(기타)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제16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.

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.

제161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·의결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62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
2.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사무소의 위치
4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
5.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
6.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
7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8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63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·감독) ① 시·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